

의안번호	제 101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11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진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10월 5일

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박진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0월 25일
발의자 : 박진희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지현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,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위임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힘
(안 제1조)
- 나.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 내용 보완(안 제5조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제3항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” 를 “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제3항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제1항” 을 “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제1항” 으로, “자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8호” 를 “자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8호” 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적용범위)” 를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” 을 “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” 으로, “조례가” 를 “조례에서” 로, “의한다” 를 “따른다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전단 중 “지원 할” 을 “지원할” 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보조금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 를 “보조금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지도감독)” 을 “(지도·감독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” 을 “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 으로, “필요한” 을 “시정요구 등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제3항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제3항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운수종사자”란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</u>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<u>자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</u>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<u>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<u>자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8호</u>----- ----- --.</p>
<p>제3조(<u>적용범위</u>)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<u>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	<p>제3조(<u>다른 조례와의 관계</u>) ----- ----- <u>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</u> ----- ----- <u>조례에서</u> ----- ----- <u>따른다.</u></p>
<p>제4조(연수기관의 지정) ① (생략)</p>	<p>제4조(연수기관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도감독) ① (생략)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

----- 지원할 ----- 보조금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-----
-----.

제5조(지도·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-----
----- 시정요구 등 필
요한 ---.

<삭제>

관계법령
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24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, 제3호 또는 제4호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)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
2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(適性)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
3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(熟知度)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
4. 국토교통부장관이 「교통안전법」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·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,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. ② ~ ⑤ (생략)

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7. (생략)

8. “운수종사자”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,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,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9. ~ 13. (생략)

제59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(생략)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·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